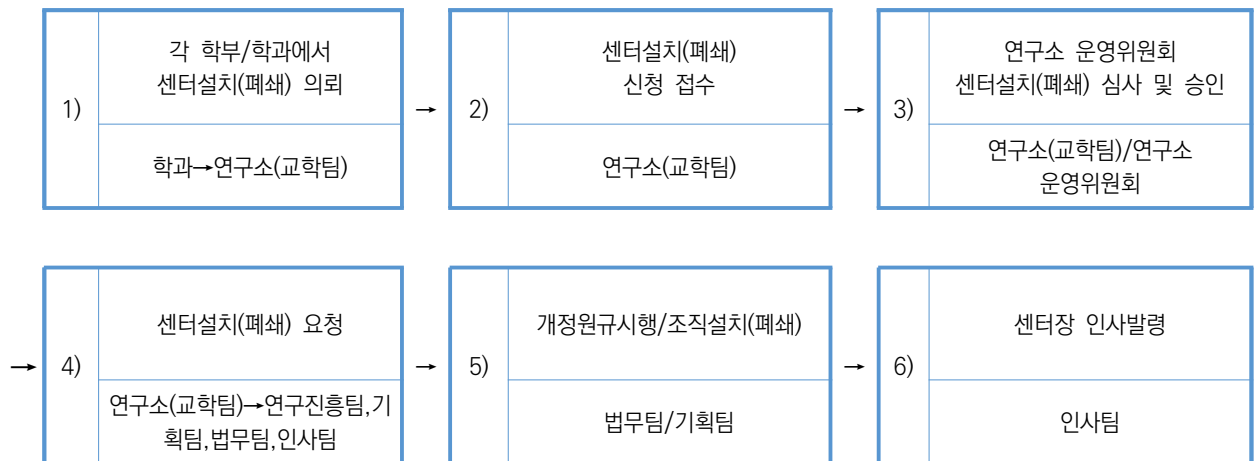


업무구분	단위업무	9.1 연구소 일반연구센터 설치 및 폐지		
연구소	작성일자	2021.9	연락처	2496

1. 업무개요

- 가. 업무내용 : 연구소 산하 일반연구센터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업무
- 나. 발생시기 : 연중 수시
- 다. 관련근거 : 연구조직 운영지침

2. 업무처리절차



3. 업무처리내용

- 1) 센터 설치(폐쇄) 신청서 제출
 - 각 학부(과) 센터 설치신청 (협조문)
- 2) 센터 설치(폐쇄) 신청서 접수
 - 연구소(교학팀)는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함
- 3) 각 연구소 운영위원회 개최
 - 서면결의 또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(폐쇄) 여부 결정.
- 4) 센터 설치(폐쇄) 요청
 - 연구소(교학팀)은 서면결의 또는 연구소 운영위원회를 통해 설치(폐쇄) 승인된 센터에 대하여 연구진흥팀, 기획팀, 법무팀, 인사팀으로 설치(폐쇄) 의뢰함.(협조문)
 - ※ 필요서류 : 센터설치(폐쇄) 신청서, 센터사업계획서, 협약서, 참여연구원현황, 참여교수의 전년도 연구계약고 등
- 5) 연구조직운영지침 개정지침 및 조직설치(폐지) 시행
- 6) 일반연구센터 설치 시 센터장 인사발령

4. 관련규정

- 가. 연구조직 운영지침

5. 활용서식

- 가. 연구센터 및 연구실 설치(폐쇄) 신청서

6. 기타 주요 참고사항

- 용어의 정의
 - "연구소"라 함은 연구실을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하여 분야별 연구사업을 공동협력으로 수행하는 상설적인 연구조직
 - "일반연구센터"라 함은 특정한 연구사업을 공동협력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수의 연구실로 구성되며, 분야별 연구소에 소속되는 한시적인 연구조직○ 일반연구센터의 설치·폐쇄
 - 일반연구실·연구센터 등의 연구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조직 설치계획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고,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행
 - 명칭
 - 목적 및 필요성
 - 연구사업계획서
 - 연구인력 및 자원인력의 현황 및 확보계획
 - 운영예산의 확보방안
 - 기타 연구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일반연구센터 운영 및 관리
 - 일반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고 학술적 기여도, 운영비 및 스페이스가 확인된 경우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설치하며, 설치 후 3년 단위로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동 연구센터 자격유지를 평가
 - 순수 연간 과기원 연구계약고 연 5억원 이상 또는 3년간 총 15억원 이상
 - 과기원 흡수 O/H 연 1억원 이상 또는 초기 3년간 총 3억원 이상
 - 경영경제 및 인문사회 분야, 산학협력 등 기타 일반연구센터 설치·운영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
 - 연구소장은 위의 심의기준을 통하여 3년 단위로 일반연구센터 연구활동을 평가하며, 연구활동이 없는 일반 연구센터는 폐쇄조치토록 하고, 연구조직 총괄부서에 통보함.